

Vol.1522

# 법원공보

2017. 6. 15. Thu.



법원행정처

## ● 목 차

내 규	929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일부개정내규
예 규	931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946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977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985	
인 사	988	
공지사항	996	

## ● 내 규

### ◎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486호 2017. 6. 8.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1인을 포함한 7인”을 “1명을 포함한 8명”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훈련대상자는 제6조에 따른 선발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원자의 조직기여도,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경쟁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위탁교육 등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발한다.

별표 2의 훈련과정의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란 중 “3년 이상인 사람”을 “3년 이상인 사람 중 학사 학위 미취득자”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란 1. 본문 중 “최근 5년 이내에 1개월 이상 국내외 연수를”을 “1개월 이상 국내외 연수를 최근 5년(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훈련 경력인 경우 1년) 이내에”로 한다.

##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제4조(국내위탁교육훈련심의위원회)

- ①·② (생략)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 ⑧ (생략)

##### 제7조(선발방법)

- ① 훈련대상자는 제6조에 따른 선발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경쟁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자의 조직기여도,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 ② (생략)

#### [별표 2]

국내위탁교육훈련대상 자격 요건  
(제6조제2항관련)

구분	훈련과정	자격요건
장기훈련	(이하 생략)	(이하 생략)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 사법부 소속 공무원(직급 제한 없음) 중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이하 생략)	(이하 생략)

#### ※ 비교

1. 장기훈련의 석사과정 및 국내외국어연수 훈련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에 1개월 이상 국내·외 연수를 다녀온 적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석사과정은 예외로 한다.
2. · 3. (생략)

#### 개정안

##### 제4조(국내위탁교육훈련심의위원회)

-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1명을 포함한 8명-----
- ④ ~ ⑧ (현행과 같음)

##### 제7조(선발방법)

- ① 훈련대상자는 제6조에 따른 선발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원자의 조직기여도,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경쟁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위탁교육 등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발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별표 2]

국내위탁교육훈련대상 자격 요건  
(제6조제2항관련)

구분	훈련과정	자격요건
장기훈련	(이하 생략)	(이하 생략)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 ----- ---- 3년 이상인 사람 중 학사학위 미취득자
	(이하 생략)	(이하 생략)

#### ※ 비교

1. ----- 1개월 이상 국내·외 연수를 최근 5년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훈련 경력인 경우 1년)이내에-----
2. · 3. (현행과 같음)

예 규

◎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28호 2017. 5. 31. 결재)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I. 1. 다. 별표 2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1]

목표달성도 평가자(제6조제1항 관련)

직급		구분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급 이상				법원행정처차장 각급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포함)	법원행정처장	
4급 (3·4급 복수직 포함), 연구관 (법원공무원규칙 제25조의2 연구관 제외)	법원행정처		소속실·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원장(관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무국장		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본원		소속 국장		법원장
		등 기 국	등기국장이 3급인 경우		소속국장	
등기국장이 4급인 경우			사무국장			

직급		구분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본원 소속 등기소	지원	소속 국장	지원장
4급 (3·4급 복수직 포함), 연구관 (법원공무원규칙 제25조의2 연구관 제외)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본원 소속 등기소	지원	소속 국장	법원장
		지원 소속 등기소	지원	지원장	법원장
		지원 소속 등기소	지원	지원장	법원장

(피평가자와 1차 평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2차 평가자가 1차 평가자를 겸하고, 사법보좌관에 대한 평가는 업무감독 법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한다.)

II. 2. 가. 4) 별표 2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2]

기 관 별		구 분		평 정 대 상 자	평 정 자	확 인 자			
		본 원	지 원	5급	6급 이하	소속실·국장	소속과장	사무국장	원장(관장)
법 원 행 정 처			5급	6급 이하	소속실·국장	소속과장	사무국장	원장(관장)	사무국장
			5급	6급 이하	소속실·국장	소속과장	사무국장	원장(관장)	사무국장
사 법 연 수 원 사 법 정 책 연 구 원 법 원 공 무 원 교 육 원 법 원 도 서 관			5급	6급 이하	사무국장	소속과장	사무국장	원장(관장)	사무국장
			5급	6급 이하	사무국장	소속과장	사무국장	원장(관장)	사무국장
고 등 법 원 특 허 법 원			5급	6급 이하	사무국장	소속과장	사무국장	법원장	사무국장
			5급	6급 이하	사무국장	소속과장	사무국장	법원장	사무국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본 원			5급	6급 이하	소속국장	소속과장	법원장	소속국장
		지 원	사 무 국 을 둔 지 원 소 속	5급	6급 이하	지원사무국장	소속과장	지원장	지원사무국장

기관별				구분	평정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원원	사무국을 두지 않은 지원	사무과장이 4급인 경우	5급 이하	지원사무과장	지원장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5급	지원장	법원장	
		6급 이하	지원사무과장	지원장			
	시·군법원	본원소속			5급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총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을 둔 지원소속			5급	지원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지원총무과장	지원사무국장
		사무국을 두지 않은 지원소속	사무과장이 4급인 경우	5급 이하	지원사무과장	지원장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5급	지원장	법원장	
	6급 이하			지원사무과장	지원장		
		등기국		5급	소속국장	법원장	
	등기소	본원소속			5급 (6급 이하 소장 포함)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장 제외)	소장	사무국장
		사무국을 둔 지원소속			5급 (6급 이하 소장 포함)	지원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소장 제외)	소장	지원사무국장

별표 2 및 별지 제8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평정자와 확인자

기관별		구분		평정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본원	지원			
법원행정처			가군	소속실·국장	차장	
			나군, 다군	소속과장	소속실·국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가군	사무국장	원장(관장)	
			나군, 다군	소속과장	사무국장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가군	사무국장	법원장	
			나군, 다군	소속과장	사무국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가군	사무국장	법원장	
			나군, 다군	소속과장	사무국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본원		가군	소속국장	법원장	
			나군, 다군	소속과장	소속국장	
	지원	사무국을둔지 소속		가군	지원사무국장	지원장
				나군, 다군	소속과장	지원사무국장
		사무국을둔지 않은지 원	사무과장이 4급인 경우	가군, 나군, 다군	지원사무과장	지원장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가군	지원장	법원장
			나군, 다군	지원사무과장	지원장	
	시· 군 법원	본원소속		가군	사무국장	법원장
				나군, 다군	총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을둔지 소속		가군	지원사무국장	지원장
				나군, 다군	지원총무과장	지원사무국장
		사무국을둔지 않은지 원소속	사무과장이 4급인 경우	가군, 나군, 다군	지원사무과장	지원장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가군	지원장	법원장	

기관별		구분		평정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등	기			
지방법원		등	국	가군	소속국장	법원장
			나군, 다군	소속과장	소속국장	
가정법원		등	본원소속	가군	사무국장	법원장
				나군, 다군	소장	사무국장
행정법원		등	사무국을둔지원소	가군	지원사무국장	지원장
				나군, 다군	소장	지원사무국장
회생법원		소	소속	가군	지원사무국장	지원장
				나군, 다군	소장	지원사무국장

[별지 제8호 서식]

(1면)

## 근 무 실 적 평 가 서(VIII. 4. 가. 관련)

1.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채용구분	성 명	채용기간	평가기간	담당업무

2. 업무성과목표 및 목표달성도평가

단위목표 ①	추진일정 ②	업무 비중 ③	달 성 도 평 가				
			자기평가 ④	1차평가 ⑤	2차평가 ⑥	계 ⑦	점수 ⑧
1)							
2)							
3)							
4)							
⑨ 총 점							
평 가 자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1 차 평 가 자							
2 차 평 가 자							

-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함.
- ② 추진일정 : 목표과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함.
- ③ 업무비중 : 단위목표가 전체 업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하며 각 단위목표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함.
- ④ 자기평가 : 임기제공무원이 단위목표에 대한 목표달성도(%)로 평가함.
- ⑤ ⑥ 1·2차 평가 : 1·2차 평가자가 각 단위목표별로 50점 범위에서 각각 점수를 부여하되 동점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함.
- ⑦ 계 : ⑤ ⑥항의 합계 점수를 기재함.
- ⑧ 점수 : ⑦항의 점수×업무비중으로 산출된 단위목표별 점수를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기재함.
- ⑨ 총점 : ⑧항의 단위목표별 점수를 합한 점수를 기재함.

(2면)

3. 평가의견

가. 능력(1차 평가자가 탁월, 우수, 보통으로 기재함)

이해판단능력		기획·연구능력	
업무추진능력		업무숙지도	
정보화능력			

나. 인품(1차 평가자가 상, 중, 하로 기재함)

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협조성	

다. 종합평가의견(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1차 평가자의견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차 평가자의견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종합평가의견란은 피평가자의 목표달성도, 위·나항에 대한 의견 및 건강, 생활태도, 가정생활, 그 밖에 평가에 참고할 만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재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II1다

[별표 2의 1]

목표달성도 평가자(제6조제1항 관련)

직급		구분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급 이상			법원행정처차장 각급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포함)	법원행정 처장	
4급 (3·4급 복수직 포함), 연구관 (법원공무원 규칙 제25조의2 연구관 제외)	법원행정처	소속실·국장		법원행정 처 차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 연구원, 법원공무원 교육원,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원장 (관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무국장		법원장	
	지방 법원, 가정 법원, 행정 법원, 회생 법원	본원	소속 국장		법원장
		본원 소속 등기 소	소속 국장		법원장
		지원	지원장		법원장
지원 소속 등기 소		지원장		법원장	

(이하 생략)

개정안

II1다

[별표 2의 1]

목표달성도 평가자(제6조제1항 관련)

직급		구분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급 이상			법원행정처차장 각급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포함)	법원행정 처장	
4급 (3·4급 복수직 포함), 연구관 (법원공무원 규칙 제25조의2 연구관 제외)	법원행정처	소속실·국장		법원행정 처 차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 연구원, 법원공무원교 육원,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원장 (관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무국장		법원장	
	지방 법원, 가정 법원, 행정 법원, 회생 법원	본원	소속 국장		법원장
		등기 국	등기국장이 3급인 경우	소속 국장	법원장
			등기국장이 4급인 경우	사무 국장	법원장
		본원 소속 등기 소	소속 국장		법원장
		지원	지원장		법원장
지원 소속 등기 소		지원장		법원장	

(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

II2가4) 평정자 및 확인자(규칙 별표2의2)

기관별		구분	평정 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법원행정처			5급	소속실·국장	차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소속실·국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5급	사무국장	원장(관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사무국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5급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사무국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본원		5급	소속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소속국장		
	지원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5급	지원 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지원 사무국장	
		사무국을 둔 지원	사무과장이 4급인 경우		5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5급	지원장	법원장
	사무국을 둔 지원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6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6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시·군 법원	본원 소속		5급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총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5급	지원 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지원 총무과장	지원 사무국장
		사무국을 둔 지원	사무과장이 4급인 경우		5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5급	지원장	법원장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6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6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개정안

II2가4) 평정자 및 확인자(규칙 별표2의2)

기관별		구분	평정 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법원행정처			5급	소속실·국장	차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소속실·국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5급	사무국장	원장(관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사무국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5급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사무국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본원		5급	소속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소속국장		
	지원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5급	지원 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지원 사무국장	
		사무국을 둔 지원	사무과장이 4급인 경우		5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5급	지원장	법원장
	사무국을 둔 지원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6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6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시·군 법원	본원 소속		5급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총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5급	지원 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지원 총무과장	지원 사무국장
		사무국을 둔 지원	사무과장이 4급인 경우		5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5급	지원장	법원장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6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6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현행

II2가4) 평정자 및 확인자(규칙 별표2의2)

기관별		구분	평정 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지방 법원, 가정 법원, 행정 법원, 회생 법원	등 기 소	본원 소속	5급(6급 이하 소장 포함)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장 제외)	소 장	사무국장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5급(6급 이하 소장 포함)	지원 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소장 제외)	소 장	지원 사무국장	

개정안

II2가4) 평정자 및 확인자(규칙 별표2의2)

기관별		구분	평정 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지방 법원, 가정 법원, 행정 법원, 회생 법원	등기국		5급	소속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소속국장
	본원 소속		5급(6급 이하 소장 포함)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장 제외)	소 장	사무국장
	등기소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5급(6급 이하 소장 포함)	지원 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소장 제외)	소 장	지원 사무국장

현행

[별표 2] 평정자와 확인자

기관별		구분	평정 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법원행정처		가군	소속실·국장	차장			
		나군, 다군	소속과장	소속실·국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가군	사무국장	원장(관장)			
		나군, 다군	소속과장	사무국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가군	사무국장	법원장			
		나군, 다군	소속과장	사무국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본원		가군	소속국장	법원장		
			나군, 다군	소속과장	소속국장		
	지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가군	지원사무국장	지원장	
				나군, 다군	소속과장	지원사무국장	
	원	사무국을 두지 않은 지원	사무과장이 4급인 경우	가군, 나군, 다군	지원사무과장	지원장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가군	지원장	법원장
			나군, 다군		지원사무과장	지원장	
				가군	지원장	법원장	
	시·군법원	본원 소속		가군	사무국장	법원장	
				나군, 다군	총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가군	지원사무국장	지원장	
				나군, 다군	지원총무과장	지원사무국장	
			사무국을 두지 않은 지원 소속	사무과장이 4급인 경우	가군, 나군, 다군	지원사무과장	지원장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가군	지원장
			나군, 다군	지원사무과장		지원장	
				가군	지원장	법원장	

개정안

[별표 2] 평정자와 확인자

기관별		구분	평정 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법원행정처		가군	소속실·국장	차장			
		나군, 다군	소속과장	소속실·국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가군	사무국장	원장(관장)			
		나군, 다군	소속과장	사무국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가군	사무국장	법원장			
		나군, 다군	소속과장	사무국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본원		가군	소속국장	법원장		
			나군, 다군	소속과장	소속국장		
	지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가군	지원사무국장	지원장	
				나군, 다군	소속과장	지원사무국장	
	원	사무국을 두지 않은 지원	사무과장이 4급인 경우	가군, 나군, 다군	지원사무과장	지원장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가군	지원장	법원장
			나군, 다군		지원사무과장	지원장	
				가군	지원장	법원장	
	시·군법원	본원 소속		가군	사무국장	법원장	
				나군, 다군	총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가군	지원사무국장	지원장	
				나군, 다군	지원총무과장	지원사무국장	
			사무국을 두지 않은 지원 소속	사무과장이 4급인 경우	가군, 나군, 다군	지원사무과장	지원장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가군	지원장
			나군, 다군	지원사무과장		지원장	
				가군	지원장	법원장	

현행

[별표 2] 평정자와 확인자

기관별		구분	평정 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기국(소)	본원 소속	가군	사무국장	법원장
			나군, 다군	소장	사무국장
	사무국을 둔 지원소속	가군	지원사무국장	지원장	
		나군, 다군	소장	지원사무국장	

개정안

[별표 2] 평정자와 확인자

기관별		구분	평정 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기국		가군	소속국장	법원장
			나군, 다군	소속과장	소속국장
	등기소	본원 소속	가군	사무국장	법원장
			나군, 다군	소장	사무국장
사무국을 둔 지원소속	가군	지원사무국장	지원장		
	나군, 다군	소장	지원사무국장		

현행

[별지 제8호 서식] 근무실적평가서  
(Ⅷ. 2. 가. 관련)

(1면)

근무실적평가서(Ⅷ. 4. 가. 관련)

1.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채용 구분	성명	채용 기간	평가 기간	담당 업무

2. 업무성과목표 및 목표달성도평가

단위 목표 ①	추진 일정 ②	업무 비중 ③	달성도평가				
			자기 평가 ④	1차 평가 ⑤	2차 평가 ⑥	계 ⑦	점수 ⑧
1)							
2)							
3)							
4)							
⑨ 총 점							
평가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① ~ ④ (생략)

⑤ ⑥ 1·2차 평가: 1·2차 평가자가 각 단위목표  
별로 50점 범위에서 각각 점수를 부여함

⑦ ~ ⑨ (생략)

개정안

[별지 제8호 서식] 근무실적평가서  
(Ⅷ. 2. 가. 관련)

(1면)

근무실적평가서(Ⅷ. 4. 가. 관련)

1.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채용 구분	성명	채용 기간	평가 기간	담당 업무

2. 업무성과목표 및 목표달성도평가

단위 목표 ①	추진 일정 ②	업무 비중 ③	달성도평가				
			자기 평가 ④	1차 평가 ⑤	2차 평가 ⑥	계 ⑦	점수 ⑧
1)							
2)							
3)							
4)							
⑨ 총 점							
평가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⑥ -----  
-----부여하  
되 동점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함

⑦ ~ ⑨ (현행과 같음)

(2면)

현 행

3. 평가의견

가. 능력(1차 평가자가 탁월, 우수, 보통으로 기재함)

이 해 판단능력		기 획· 연구능력	
업 무 추진능력		업무 숙지도	
정보화 능 력			

나. 인품(1차 평가자가 상, 중, 하로 기재함)

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협조성	

다. 종합평가의견(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평가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1차 평가자 의 견					
	소속 : 성명 :	직위 :			(서명)
2차 평가자 의 견					
	소속 : 성명 :	직위 :			(서명)

※ (이하 생략)

개 정 안

3. 평가의견

가. 능력(1차 평가자가 탁월, 우수, 보통으로 기재함)

이 해 판단능력		기 획· 연구능력	
업 무 추진능력		업무 숙지도	
정보화 능 력			

나. 인품(1차 평가자가 상, 중, 하로 기재함)

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협조성	

다. 종합평가의견(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평가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1차 평가자 의 견					
	소속 : 성명 :	직위 :			(서명)
2차 평가자 의 견					
	소속 : 성명 :	직위 :			(서명)

※ (이하 현행과 같음)

### ◎ 공인증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29호 2017. 6. 2. 결재)

공인증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개법인”을 “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증개법인”을 “법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반명합판 사진(3cm×4cm)”을 “여권용 사진(3.5cm×4.5cm)”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증개법인”을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개업자”를 “개업공인증개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업공인증개사
2. 법인인 개업공인증개사

제2조제4항 본문, 제3조제4항, 제4조제4항 중 “증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증개사”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개업자”를 “개업공인증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수료표”를 “보수표”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공인증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증개사법」”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증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증개사”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① 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 폐업, 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규에서 정하는 신고서에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감독법원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증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4호 양식에 의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임장에는 사건번호, 개별매각의 경우 물건번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위임내용, 위임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위임인이 위임장에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방법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절차 등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 및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15조 제목 중 “수수료”를 “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수료표”를 “보수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등기부”를 “등기기록”으로, “수수료”를 “보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수료”를 “보수”로 한다.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인”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1호, 제2-2호, 제3호(앞쪽)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 양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4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뒷쪽)

##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제21조제1항 제2호에 의한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2. 민사집행법 제108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제22조에 따른 매수신청대리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법 제21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또는 임원으로 있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 민사집행법 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제4호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40조(공무상 비밀표시무효),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제323조부터 제327조까지(권리행사방해, 강요, 인질강요, 인질상해·치상, 인질상해·치사,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중권리행사방해, 강제집행면탈)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별지 제2-1호 양식]

등록번호 :

사 진  
(3.5cm×4.5cm)

##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input type="checkbox"/> 공인중개사 <input type="checkbox"/> 법인		
사무소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분사무소 소재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법원장 인

[별지 제2-2호 양식]

등록번호 :	사 진 (3.5cm×4.5cm)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input type="checkbox"/> 공인중개사 <input type="checkbox"/> 법인		
사무소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분사무소 소재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3항,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법원장 인			

[별지 제3호 양식]

(앞 쪽)

매수신청대리인등록대장				<input type="checkbox"/> 공인중개사 <input type="checkbox"/> 법인	
등록번호	성 명	등록 연월일		등록 연월일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록자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명칭					
손해배상책임 보증		주사무소 소재지			
분사무소 (법인의 경우)		보증의 구분			
		및 보장기관			
		보증금액			
		보장기간			
		설치연월일			
사무소 소재지					
책임자(공인중개사 자격증번호)					

(사무소변경사항)

연	월	일	사	무	소	명	칭	연	월	일	소	계	지







[별지 제7호 양식]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일련번호 2006-	경매사건 번호 지방법원    지원    타경	물건번호
부동산의 표시		
위임인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수액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법규상 보수표의 범위 결정된 보수액
	매수신청 대리 보수	법규상 보수표의 범위 결정된 보수액
	특별비용	사유 결정된 보수액
	★보수에 관한 법규의 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위임인 (인)	
위임내용	상담 및 권리분석 ( ) 매수신청대리 ( )	
위임일자	년    월    일	
특약사항		
결과	입찰에 참가하여 매수에 성공 ( )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매수에 실패 ( )	
	입찰에 참가하지 않음 ( )	
첨부서면	확인·설명서 ( )	
	보수영수증 ( )	
	기타	
년    월    일 개업공인증개사 (인) 법인인 개업공인증개사    대표이사 (인)		

(주1) 일련번호는 '연도-누적번호'의 형식으로 부여함

(주2) 위임인이 다수일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하고 간인하여야 함

[별지 제8호 양식]

매수신청대상물 확인·설명서				
대상물건의 표시	공부상 사항			
	실제 사항	공부와 같음( ) 공부와 다름( ) 내역: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등기기록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사항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	
		토지	토지	
		건물	건물	
	실제 권리관계	토지 건물		
	임대차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	토지			
	건물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	감정평가서의 내용			
	개업공인중개사 의 평가	감정평가서와 같거나 비슷함( )		
		감정평가서와 다름( )	이유	
			평가내역	토지 건물
	평가액			
	매각 예상가격	원 (최저 매각가격:                      원)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기록 기재사항			
	기타 사항			
첨부서면	등기사항증명서( ), 감정평가서 사본( ), 토 지건축물대장( )		기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span>년 월 일</span> <span>개업공인중개사 (인)</span> </div>				

[별지 제9호 양식]

## 매수신청대리 등 보수표

### (1)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①보수 :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주의사항

- 4개 부동산 이상의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3개를 초과하는 것부터 1부동산 당 5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증액할 수 있다(예를 들어, 5개 부동산의 일괄매각의 경우 3개를 초과하는 2개 때문에 60만원까지로 보수의 상한선 범위가 증액될 수 있음).
- 개별매각의 여러 물건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에는 1부동산당 5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증액할 수 있다.
- 위 보수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 (2)매수신청대리 보수

#### (가)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

①보수 :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주의사항

- 위 보수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 (나)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

①보수 요율 :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주의사항

- 위 보수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 (3)실비

①보수 : 3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주의사항

- 실비는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비용(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 등)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에 관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상의 비용(**등기사항증명서** 비용, 근거리 교통비 등)은 위 보수에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 실비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 양식]

보수 영수증

개업공인증개사	납세번호				
	사무소명칭				
	성명(대표자)	(인)			
	사무소소재지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연월일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보수액	위임인 부담액
	사건번호	물건번호	감정가/ 최저매각가격		

[별지 제12호 양식]

## 매수신청대리업무 조사권한증명서

## 1. 조사·검사자의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2. 조사·검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대상지역 :

위 사람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법원장(또는 지방법원 지원장) 인

유의사항

1.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자가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증과 이 증명서를, 협회의 사도지부 직원일 경우 협회의 사도지부 대표자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 또는 검사에 기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3호 양식]

등록취소·업무정지 관리대장							
지방법원						년도	
연번	등록번호 (자격번호)	개업공인증개사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명칭 (주 소)	위반사항 (관련조문)	처분내용	비고



### 신·구조문대비표( I )

현행	개정안
제2조(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신청 등)	제2조(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신청 등)
<p>①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양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중개사무소(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하 “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u> 신청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법인의 <u>등기부등본(중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u>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3. ~ 4. (생략)</p> <p>5. <u>반명합판 사진(3cm×4cm) 2매</u></p> <p>6. (생략)</p> <p>②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20,000원, <u>중개법인의 경우 30,000원</u>이고,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u>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u>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1. <u>공인중개사</u></p> <p>2. <u>중개법인</u></p>	<p>① ----- ----- ----- -----<u>법인</u>-----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u>---,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 ----- ----- -----.</p> <p>3. ~ 4. (현행과 같음)</p> <p>5. <u>여권용 사진(3.5cm×4.5cm) 2매</u></p> <p>6. (현행과 같음)</p> <p>② ----- -----<u>법인</u>----- -----.</p> <p>③ ----- -----<u>개업공인중개사</u>----- -----.</p> <p>1. <u>개업공인중개사</u></p> <p>2. <u>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u></p>

현 행

④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증의 교부 등)

- ① ~ ③ (생략)
- ④ 중개업자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중개사무소이전신고 등)

- ① ~ ③ (생략)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송부 받은 지방법원장은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행한다.

제5조(등록증 등의 게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당해 사무소 안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대리 등록 수수료표
3. (생략)

개 정 안

④ -----개업공인중개사-----  
-----  
-----  
-----  
-----.

제3조(등록증의 교부 등)

-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개업공인중개사-----  
-----  
-----  
-----.

제4조(중개사무소이전신고 등)

-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  
-----  
-----개업공인중개사-----  
-----.

제5조(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  
-----.

1. (현행과 같음)
2. -----  
보수표
3. (현행과 같음)

현 행

제6조(교육시간 등)

- ① ~ ② (생 략)
- ③ (생 략)
  - 1. (생 략)
  -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제9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제10조(보증의 변경)

- ① 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제6조(교육시간 등)

-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2. 「공인중개사법」-----  
-----  
-----

제9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  
-----3개월-----  
-----  
-----.

-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보증의 변경)

- ① -----  
---개업공인중개사-----  
-----  
-----  
-----.
- ② -----개업공인중개사-----  
-----  
-----  
-----.





현 행

- ② 지방법원장은 등록취소,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중개업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생략)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⑤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 법인인 중개업자가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 정 안

- ② -----  
-----  
개업공인중개사-----  
-----  
-----.
- ③ (현행과 같음)
- ④ -----개업  
공인중개사-----  
-----  
-----.
- ⑤ -----  
-----  
개업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

## 신·구 별지양식 대비표(II)

### 현행

#### [별지 제1호 앞쪽]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		(알록)	
※ 해당되는 □란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14일	
인쇄소	①성명 (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대표지주소)	(전화 : )	
⑥중개업자 종류	<input type="checkbox"/> 공인중개사 <input type="checkbox"/> 중개법인		
사무소	①명칭	②전화번호	
	③사무소 소재지		
	④사무소 소재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동 예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법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중개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말한다). 2. 법인의 등기부등본 1부(중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때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중개업자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 1부 4.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5. 방명簿(30cm×40cm) 사진 2매 6. 위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증보험증서 사본, 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중 어느 하나		
⑩신청인 확인란	신청인은 「중개업자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규정된 등록결격사유(및인 기재사항 참조)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 안내			
신청하는 곳	지방법원	담당부서 (전화번호)	매수신청대리인 담당부서 ( )
		수수료	공인중개사 20,000원 중개법인 30,000원

#### [별지 제1호 뒤쪽]

(뒷쪽)

#### ※ 「중개업자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민사집행법 제108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또는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

#### ※ 민사집행법 제108조(메카장소의 권리유지) 제4호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40조(공무상 비밀표시무효),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및 제323조 내지 제327조(권리행사방해,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중권리행사방해, 강제집행면탈)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개정안

#### [별지 제1호 앞쪽]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		(알록)	
※ 해당되는 □란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대표지주소)	(전화 : )	
⑥개업공인중개사종별	<input type="checkbox"/> 공인중개사 <input type="checkbox"/> 법인		
사무소	①명칭	②전화번호	
	③사무소 소재지		
	④사무소 소재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동 예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법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말한다).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때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 1부 4.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5. 여권용 사진(3.5cm×4.5cm) 2매 6. 위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증보험증서 사본, 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중 어느 하나		
⑩신청인 확인란	신청인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규정된 등록결격사유(및인 기재사항 참조)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 안내			
신청하는 곳	지방법원	담당부서 (전화번호)	매수신청대리인 담당부서 ( )
		수수료	공인중개사 : 20,000원 법인 : 30,000원

#### [별지 제1호 뒤쪽]

(뒷쪽)

####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제21조제1항제2호에 의한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2. 민사집행법 제108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제22조에 따른 매수신청대리업무경지처분을 받고 법 제21조에 따라 복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경지기간(배업에 불구하고 집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업무경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인 법인의 업무경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경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또는 임원으로 있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 민사집행법 제108조(메카장소의 권리유지) 제4호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40조(공무상 비밀표시무효),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점제),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제323조부터 제327조까지(권리행사방해, 강요, 인권강요, 인권상해·괴상, 인권상해·괴상,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중권리행사방해, 강제집행면탈)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현행

[별지 제2-1호]

등록번호 :		사 진 (3cm×4cm)	
<b>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b>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중개업자 종별	<input type="checkbox"/> 공인중개사 <input type="checkbox"/> 법인		
사무소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분사무소 소재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 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법원장 圖			

[별지 제2-2호]

등록번호 :		사 진 (3cm×4cm)	
<b>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b>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중개업자 종별	<input type="checkbox"/> 공인중개사 <input type="checkbox"/> 법인		
사무소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분사무소 소재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공인중 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법원장 圖			

개정안

[별지 제2-1호]

등록번호 :		사 진 (3.5cm×4.5cm)	
<b>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b>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input type="checkbox"/> 공인중개사 <input type="checkbox"/> 법인		
사무소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분사무소 소재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 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법원장 圖			

[별지 제2-2호]

등록번호 :		사 진 (3.5cm×4.5cm)	
<b>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b>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input type="checkbox"/> 공인중개사 <input type="checkbox"/> 법인		
사무소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분사무소 소재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3항,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였음 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법원장 圖			

현행

[별지 제3호 앞쪽]

(앞쪽)

매수신청대리인등록대상				<input type="checkbox"/> 공인중개사 <input type="checkbox"/> 중개법인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등록자	성명 (법인명)		주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인등록번호		
	주소				
사무소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손해배상책임 보증	보증의 구분 및 보장기간				
	보증금액				
	보증기간				
분사무소 (법인의 경우)	설치 연월일				
	사무소 소재지				
	별첨지(공인중개사 자격증번호)				

(사무소명칭사항)

연월일	사무소명칭	연월일	소재지

[별지 제4호]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해당되는 □안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②주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주인등록번호
	⑤주소 (대표자주소)		(전화 : )
사무소	⑥개업종 종별	<input type="checkbox"/> 공인중개사 <input type="checkbox"/> 중개법인	⑦매수신청대리인 등록번호
	⑧명칭		⑨전화번호
	⑩주사무소 소재지		
	⑪분사무소 소재지		
⑫재교부 신청 사유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법원장 귀하			
구비서류	반평합판(3cm×4cm) 사진 1매		

※ 신고안내

신고하는 곳	지방법원	담당부서 (전화번호)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담당부서 ( )
		수수료	

개정안

[별지 제3호 앞쪽]

(앞쪽)

매수신청대리인등록대상				<input type="checkbox"/> 공인중개사 <input type="checkbox"/> 법인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등록자	성명 (법인명)		주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인등록번호		
	주소				
사무소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손해배상책임 보증	보증의 구분 및 보장기간				
	보증금액				
	보증기간				
분사무소 (법인의 경우)	설치 연월일				
	사무소 소재지				
	별첨지(공인중개사 자격증번호)				

(사무소명칭사항)

연월일	사무소명칭	연월일	소재지

[별지 제4호]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해당되는 □안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②주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주인등록번호
	⑤주소 (대표자주소)		(전화 : )
사무소	⑥개업종 종별	<input type="checkbox"/> 공인중개사 <input type="checkbox"/> 법인	⑦매수신청대리인 등록번호
	⑧명칭		⑨전화번호
	⑩주사무소 소재지		
	⑪분사무소 소재지		
⑫재교부 신청 사유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법원장 귀하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3.5cm×4.5cm) 1매		

※ 신고안내

신고하는 곳	지방법원	담당부서 (전화번호)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담당부서 ( )
		수수료	



현행

[별지 제7호]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일련번호 2006- 부동산의 표시		경매사건 번호 지방법원 지원 타경 물건번호	
위임인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6자리만 기재)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6자리만 기재) 주소	
보수액	상당 및 관리분석 수수료	법규상 수수료의 범위 결정된 수수료액	
	매수신청 대리 수수료	법규상 수수료의 범위 결정된 수수료액	
	특별비용	사유 결정된 수수료액	
	★수수료에 관한 법규의 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 . 위임인 (인)		
위임내용	상당 및 관리분석 ( ) 매수신청대리 ( )		
위임일자 특약사항	년 월 일		
결과	입찰에 참가하여 매수에 성공 ( )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매수에 실패 ( ) 입찰에 참가하지 않음 ( )		
	확인·설명서 ( ) 수수료 영수증 ( ) 기타		
	년 월 일 중인중개사 (인) 중인중개법인 대표이사 (인)		

(주1) 일련번호는 '연도·누적번호'의 형식으로 부여함  
(주2) 위임인이 다수일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하고 간인하여야 함

[별지 제8호]

매수신청대상물 확인·설명서				
대상물 권의 표시	중부상 사항			
	실제 사항	중부와 같음( ) 중부와 다름( ) 내역: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토지	토지	
		건물	건물	
		토지	건물	
	실제 권리관계	건물		
	임대차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	토지			
	건물			
대상물 권의 경제 적 가치	감정평가서의 내용	감정평가서와 같거나 비슷함( )		
	중인중개사의 평가 가치	이유		
		감정평가서와 다 름( )	평가내역	토지 건물
		평가액	원 (회계 평가가격: 원)	
매각 예상가격	원 (회계 평가가격: 원)			
매수인이 인수하 게 될 부담	등기부 기재사항			
	기타 사항			
첨부서면	등기부 등본( ), 감정평가서 사본( ), 토지·건축물대장( )	기타		
	년 월 일 중인중개사 (인)			

개정안

[별지 제7호]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일련번호 2006- 부동산의 표시		경매사건 번호 지방법원 지원 타경 물건번호	
위임인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수액	상당 및 관리분석 보수	법규상 보수료의 범위 결정된 보수액	
	매수신청 대리 보수	법규상 보수료의 범위 결정된 보수액	
	특별비용	사유 결정된 보수액	
	★보수에 관한 법규의 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 . 위임인 (인)		
위임내용	상당 및 관리분석 ( ) 매수신청대리 ( )		
위임일자 특약사항	년 월 일		
결과	입찰에 참가하여 매수에 성공 ( )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매수에 실패 ( ) 입찰에 참가하지 않음 ( )		
	확인·설명서 ( ) 보수영수증 ( ) 기타		
	년 월 일 개업중인중개사 (인) 법원인 개업중인중개사 대표이사 (인)		

(주1) 일련번호는 '연도·누적번호'의 형식으로 부여함  
(주2) 위임인이 다수일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하고 간인하여야 함

[별지 제8호]

매수신청대상물 확인·설명서				
대상물 권의 표시	중부상 사항			
	실제 사항	중부와 같음( ) 중부와 다름( ) 내역: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토지	토지	
		건물	건물	
		토지	건물	
	실제 권리관계	건물		
	임대차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	토지			
	건물			
대상물 권의 경제 적 가치	감정평가서의 내용	감정평가서와 같거나 비슷함( )		
	개업중인중개사 의 평가 가치	이유		
		감정평가서와 다 름( )	평가내역	토지 건물
		평가액	원 (회계 평가가격: 원)	
매각 예상가격	원 (회계 평가가격: 원)			
매수인이 인수하 게 될 부담	등기부 기재사항			
	기타 사항			
첨부서면	등기부 등본( ), 감정평가서 사본( ), 토지·건축물대장( )	기타		
	년 월 일 개업중인중개사 (인)			

현행

[별지 제9호]

매수신청대리 등 수수료표

(1)상당 및 권리분석 수수료

①수수료 :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주의사항

- 4개 부동산 이상의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3개를 초과하는 것부터 1부동산 당 5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증액할 수 있다(예를 들어, 5개 부동산의 일괄매각의 경우 3개를 초과하는 2개 때문에 60만원까지로 수수료의 상한선 범위가 증액될 수 있음).
- 개별매각의 여러 물건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에는 1부동산당 5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증액할 수 있다.
- 위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2)매수신청대리 수수료

(가)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

①수수료 :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주의사항

- 위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나)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

①수수료 요율 :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주의사항

- 위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3)실비

①수수료 : 3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주의사항

- 실비는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비용(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 등)으로써 중개업자는 이에 관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상의 비용(동기부동산 비용, 근거리 교통비 등)은 위 수수료에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보고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 실비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

수수료 영수증

등인증개사	납세번호			
	사무소명칭			
	성명(대표자)	(인)		
	사무소소재지			
	등록번호			
과성 연월일				
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연월일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수수료	위임인 부담액
	사건번호	물건번호		

개정안

[별지 제9호]

매수신청대리 등 보수표

(1)상당 및 권리분석 보수

①보수 :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주의사항

- 4개 부동산 이상의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3개를 초과하는 것부터 1부동산 당 5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증액할 수 있다(예를 들어, 5개 부동산의 일괄매각의 경우 3개를 초과하는 2개 때문에 60만원까지로 보수의 상한선 범위가 증액될 수 있음).
- 개별매각의 여러 물건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에는 1부동산당 5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증액할 수 있다.
- 위 보수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2)매수신청대리 보수

(가)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

①보수 :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주의사항

- 위 보수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나)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

①보수 요율 :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주의사항

- 위 보수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3)실비

①보수 : 3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주의사항

- 실비는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비용(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 등)으로써 개입증인증개사는 이에 관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상의 비용(동기사항증명서 비용, 근거리 교통비 등)은 위 보수에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보고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 실비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

보수 영수증

개입증인증개사	납세번호			
	사무소명칭			
	성명(대표자)	(인)		
	사무소소재지			
	등록번호			
과성 연월일				
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연월일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보수액	위임인 부담액
	사건번호	물건번호		



현행

<신설>

개정안

[별지 제14호]

<input type="checkbox"/> 매수신청대리업 <input type="checkbox"/> 폐업 <input type="checkbox"/> 분사무소 <input type="checkbox"/> 휴업, <input type="checkbox"/> 재개            신고서 <span style="margin-left: 150px;"><input type="checkbox"/> 휴업기간 변경</span>			
※ 해당되는 □란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①정명 (법인명)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대표자주소) (전화 : )		
⑥개업공인중개사 종류	<input type="checkbox"/> 공인중개사    ⑦매수신청대리인 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별인		
중개사무소	⑧명칭	⑨소재지 (전화 : )	
	⑩소재지		
신고사항	<input type="checkbox"/> 폐업	폐업일	
	<input type="checkbox"/> 휴업	휴업기간 ~ ( 일간)	
	<input type="checkbox"/> 재개	재개일	
	<input type="checkbox"/> 휴업기간 변경	원래 휴업기간 ~ ( 일간) 변경 휴업기간 ~ ( 일간)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 제1항, 예규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법원장 귀하			
첨부서류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폐업 및 휴업에 한함)		
※ 신고안내			
신고하는 곳	지방법원	담당부서 (전화번호)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담당부서 ( )
		수수료	없음

**◎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30호 2017. 6. 2. 결재)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개법인”을 “법인”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8조 중 “15명 이상 100명 이하”를 “100명 이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학 적 부

사 진 3.5×4.5cm	성 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	(전화번호: )		
	공인중개사 자격증	년	월	일 취득번호: 호
출석시간 : / 44		평가점수 : / 100		
교 육 이 수 증		년	월	일 발급 발급번호 호

사 진 3.5×4.5cm	성 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	(전화번호: )		
	공인중개사 자격증	년	월	일 취득번호: 호
출석시간 : / 44		평가점수 : / 100		
교 육 이 수 증		년	월	일 발급 발급번호 호

사 진 3.5×4.5cm	성 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	(전화번호: )		
	공인중개사 자격증	년	월	일 취득번호: 호
출석시간 : / 44		평가점수 : / 100		
교 육 이 수 증		년	월	일 발급 발급번호 호

사 진 3.5×4.5cm	성 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	(전화번호: )		
	공인중개사 자격증	년	월	일 취득번호: 호
출석시간 : / 44		평가점수 : / 100		
교 육 이 수 증		년	월	일 발급 발급번호 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이수증

성 명 :

생년월일 :

주소/거소 :

상기인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기 관 장



### 신·구조문대비표( I )

#### 현 행

##### 제2조(교육대상)

다음 각 호의 중개업자는 규칙 제10조에 의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개법인의 대표자인 공인중개사

##### 제3조(교육기관의 범위)

법원행정처장은 실무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교육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한다.

1. (생 략)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 제7조(실무교육기관의 지정)

- ① ~ ③ (생 략)
- ④ 제3항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승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⑤ (생 략)

##### 제8조(수강인원 등)

교육기관은 반을 편성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반의 수강인원은 15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개 정 안

##### 제2조(교육대상)

-----개업공인중개사-----  
-----.

1. (현행과 같음)
2. -----법인-----  
-----

##### 제3조(교육기관의 범위)

-----  
-----  
-----.

1. (현행과 같음)
2. 「공인중개사법」-----  
-----  
-----

##### 제7조(실무교육기관의 지정)

-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2년-----  
-----.
- ⑤ (현행과 같음)

##### 제8조(수강인원 등)

-----  
-----100명 이하-----  
-----.

## 신·구별지양식대비표(II)

### 현행

(별지 제1호서식)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수강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거소	(전화번호: )		
공인중개사자격증	년 월 일 취득	자격증번호:	호
<p>상기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수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 또는 서명)</p> <p style="text-align: right;">장 귀하</p>			
붙임	1. 수강료 원 2. 사진(3×4cm) 2매		

(별지 제2호서식)

### 학 적 부

사 권 3×4cm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소	(전화번호: )		
공인중개사 자격증		년 월 일 취득번호:	호	
출석시간 : / 44		평가점수 : / 100		
교육이수증	년 월 일 발급	발급번호 호		

  

사 권 3×4cm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소	(전화번호: )		
공인중개사 자격증		년 월 일 취득번호:	호	
출석시간 : / 44		평가점수 : / 100		
교육이수증	년 월 일 발급	발급번호 호		

  

사 권 3×4cm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소	(전화번호: )		
공인중개사 자격증		년 월 일 취득번호:	호	
출석시간 : / 44		평가점수 : / 100		
교육이수증	년 월 일 발급	발급번호 호		

  

사 권 3×4cm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소	(전화번호: )		
공인중개사 자격증		년 월 일 취득번호:	호	
출석시간 : / 44		평가점수 : / 100		
교육이수증	년 월 일 발급	발급번호 호		

###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수강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전화번호: )		
공인중개사자격증	년 월 일 취득	자격증번호:	호
<p>상기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수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 또는 서명)</p> <p style="text-align: right;">장 귀하</p>			
붙임	1. 수강료 원 2. 여권용 사진(3.5×4.5cm) 2매		

(별지 제2호서식)

### 학 적 부

사 권 3.5×4.5cm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	(전화번호: )		
공인중개사 자격증		년 월 일 취득번호:	호	
출석시간 : / 44		평가점수 : / 100		
교육이수증	년 월 일 발급	발급번호 호		

  

사 권 3.5×4.5cm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	(전화번호: )		
공인중개사 자격증		년 월 일 취득번호:	호	
출석시간 : / 44		평가점수 : / 100		
교육이수증	년 월 일 발급	발급번호 호		

  

사 권 3.5×4.5cm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	(전화번호: )		
공인중개사 자격증		년 월 일 취득번호:	호	
출석시간 : / 44		평가점수 : / 100		
교육이수증	년 월 일 발급	발급번호 호		

  

사 권 3.5×4.5cm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	(전화번호: )		
공인중개사 자격증		년 월 일 취득번호:	호	
출석시간 : / 44		평가점수 : / 100		
교육이수증	년 월 일 발급	발급번호 호		



## ● 신법령 목록 (2017. 5. 16. ~ 5.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b>【조약】</b>				
조약제2353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과학, 기술 및 혁신 협력을 위한 협정	2017. 5. 24	19015	3
조약제2354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	"	18
<b>【대통령령】</b>				
대통령령제28049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7. 5. 16	19009 (그2)	2
대통령령제28050호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5
대통령령제28051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2017. 5. 29	19018	4
대통령령제28052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2805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28054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
대통령령제28055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
대통령령제28056호	점자법 시행령	"	"	17
대통령령제28057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
대통령령제2805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
대통령령제28059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2
대통령령제28060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7
대통령령제28061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8
대통령령제2806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1
대통령령제28063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3
대통령령제28064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7
대통령령제28065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8
대통령령제28066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0
대통령령제28067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1

대통령령제28068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5. 29	19018	42
대통령령제2806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5
대통령령제2807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6
대통령령제28071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8
대통령령제2807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9
대통령령제28073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0
대통령령제28074호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	"	51
대통령령제28075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75
대통령령제28076호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	"	80
대통령령제28077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4
대통령령제2807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4
대통령령제28079호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6
대통령령제28080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8
대통령령제28081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9
대통령령제28082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5. 30	19019 (그2)	2
대통령령제28083호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	"	"	4
대통령령제28084호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	"	"	5

### 【총리령】

총리령제139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5. 16	19009	4
총리령제139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5. 26	19017	4
총리령제1398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2017. 5. 30	19019	4

### 【부령】

국토교통부령제422호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5. 16	19009	5
환경부령제698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5. 17	19010	3
문화체육관광부령제294호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폐지령	2017. 5. 18	19011	4

농림축산식품부령제260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5. 22	19013	4
미래창조과학부령제94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5. 23	19014	3
법무부령제90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5. 24	19015	31
기획재정부령제62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5. 25	19016	3
행정자치부령제119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5. 29	19018	102
농림축산식품부령제26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5
해양수산부령제232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117
문화체육관광부령제293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5. 30	19019	7
문화체육관광부령제295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
국토교통부령제423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
농림축산식품부령제26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일부개정령	"	"	25
농림축산식품부령제263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8
해양수산부령제233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8
보건복지부령제495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31
보건복지부령제49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7
보건복지부령제497호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	"	41
환경부령제699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110
해양수산부령제234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110
환경부령제700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6
환경부령제70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1
환경부령제702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1
행정자치부령제120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19019 (그2)	5
농림축산식품부령제26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5. 31	19020	4
산업통상자원부령제259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

## 인 사

인사발령 법 제91호

2017. 5. 18.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탄희(李誕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5. 22.부터 2017. 8. 21.까지 휴직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92호

2017. 5. 18.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사 명 령
1. 겸 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김형식(金炯植)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나. 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이은주(李恩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에 겸임함

(2017. 5. 22.자) 끝.

인사발령 법 제93호

2017. 5. 22.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파견(학위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주대성(朱大聖)	2017. 6. 16.부터 2018. 6. 15.까지 미국 켈럼비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94호

2017. 5. 22.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퇴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연(金炯淵)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7. 5. 20.자) 끝.

인사발령 법 제95호

2017. 5. 22.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마용주(馬鏞周)	2017. 6. 22.부터 2017. 7. 1.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춘호(金春瑚)	2017. 6. 5.부터 2017. 7. 2.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원규(朴原珪)	2017. 6. 24.부터 2017. 7. 21.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안동범(安東範)	2017. 6. 10.부터 2017. 7. 7.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인식(朴寅植)	2017. 6. 2.부터 2017. 6. 29.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균철(李均徹)	2017. 6. 26.부터 2017. 7. 2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광주고등법원 판사	양영희(梁榮熙)	2017. 6. 5.부터 2017. 6. 3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 인사발령 법 제97호

2017. 5. 23.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대법관			
	대법원 대법관	고영한(高永鐸)	법원행정처장직을 면함
(2017. 5. 29.자) 끝.			

## 인사발령 법 제100호

2017. 5. 29.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소영(朴邵英)	사법연수원 교수에 포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김선아(金仙雅)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포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상훈(李相勳)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7. 6. 16.자)

## 2.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구)	김형진(金亨進)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16.부터 2017. 7. 15.까지 휴직을 명함
-----------------------	----------	---

##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은주(姜銀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5.부터 2017. 8. 18.까지 휴직을 명함
”	김신영(金信榮)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21.부터 2018. 10. 19.까지 휴직을 명함
”	김여경(金汝璟)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5.부터 2017. 8. 11.까지 휴직을 명함
”	김용중(金容重)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5.부터 2017. 9. 9.까지 휴직을 명함
”	김은솔(金은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4.부터 2018. 2. 18.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류경은(柳敬恩)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16.부터 2018. 2. 16.까지 휴직을 명함
	"	부동식(夫東植)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5.부터 2017. 8. 24.까지 휴직을 명함
	"	송미경(宋美暎)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16.부터 2018. 1. 19.까지 휴직을 명함
	"	이광헌(李匡憲)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5.부터 2017. 7. 28.까지 휴직을 명함
	"	천지성(千至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16.부터 2018. 2. 14.까지 휴직을 명함
	"	최미복(崔美福)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16.부터 2017. 8. 14.까지 휴직을 명함
	"	황재호(黃載皓)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16.부터 2017. 8. 14.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강수정(姜秀貞)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5.부터 2017. 7. 7.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권현영(權賢英)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5.부터 2018. 2. 14.까지 휴직을 명함
	"	김국식(金國植)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5.부터 2017. 7. 28.까지 휴직을 명함
	"	배상원(裵祥元)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16.부터 2018. 2. 25.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이경(金梨卿)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5.부터 2018. 2. 25.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곽형섭(郭亨燮)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16.부터 2017. 7. 15.까지 휴직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장재원(張栽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16.부터 2017. 8. 18.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친지원 판사	김정태(金正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5.부터 2017. 8. 4.까지 휴직을 명함
	"	이승연(李承娟)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19.부터 2018. 2. 14.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선아(金善娥)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5.부터 2017. 8. 4.까지 휴직을 명함
	"	심현주(沈炫住)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16.부터 2017. 8. 15.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방혜미(方惠美)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4.부터 2018. 2. 25.까지 휴직을 명함
	"	송주희(宋周熹)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16.부터 2017. 8. 15.까지 휴직을 명함
	"	장지혜(張智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16.부터 2018. 2. 23.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범준(金範竣)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16.부터 2017. 8. 11.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정우(金楨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5.부터 2017. 9. 4.까지 휴직을 명함
	"	이지영(李知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5.부터 2018. 2. 25.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박주영(朴主永)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21.부터 2018. 2. 23.까지 휴직을 명함
	광주가정법원 판사	신아름(申아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22.부터 2018. 1. 21.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회생법원 판사	노연주(盧妍朱)	2017. 6. 6.부터 2017. 8. 1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3. 복 직

##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현미(鄭炫美)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포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영주(金映周)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7. 6. 1.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영호(丁瑛昊)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	--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장수영(張洙榮)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7. 6. 16.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조혜수(曹慧秀)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7. 6. 20.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장성진(張性珍)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최보원(崔寶元)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7. 6. 24.자) 끝.

## ● 공지사항

### ◎ 5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5월분 법률도서(378책), 일반도서(24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08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 • 법률도서

####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新)법학개론 / 김영규	박영사	2017	
慶熙法學 v.52-1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慶熙大學校	2017	
高麗法學 v.83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高麗法學 v.84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국민행복 법령정비 사례집:2016 /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7	
대한변협신문 v.6 / 대한변호사협회	大韓辯護士協會	2017	
東亞法學 v.74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東亞大學校 出版部	2017	
明知法學 v.15-2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센터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센터	2017	
民主法學 v.63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관악사	2017	
法과 政策 v.23-1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濟州大學校	2017	
法과 政策研究 v.17-1 / 한국법정책학회	韓國法政策學會	2017	
법제이슈브리프: 2016년도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17	
법학개론 / 최정일	학림	2017	
法學論叢 v.34-1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7	
法學論叢 v.37-1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全南大學校 法學研究所	2017	
法學研究 v.20-1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法學研究 v.27-1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원론 / 홍성찬	박영사	2017	
成均館法學 v.29-1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成均館大學校 比較法研究所	2017	
외법논집 v.41-1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一鑑法學 v.36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저스티스 v.159 / 한국법학원	韓國法學院	2017	
中央法學 v.19-1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회	2017	
法學新報 v.123-6 / 中央大學法學會	有斐閣	2017	
法學新報 v.123-7 / 中央大學法學會	有斐閣	2017	
法學研究 v.52-4 / 北海學園大學法學會	北海學園大學法學會	2017	
比較法研究 v.78 / 比較法學會	有斐閣	2017	
立教法學 v.95 / 立教法學會	有斐閣	2017	
重要判例摘錄 v.2016 / 有斐閣	有斐閣	2017	
判例時報總索引 v.2016 / 判例時報社	判例時報社	2017	
(The) modern law review v.80-2 / Anderson, J.S. Modern Law Review Ltd	Blackwell Publishers	2017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v.25-1 /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17	
Columbia law review v.117-2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Law Review Association	2017	
Duke law journal v.66-5 /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Duke Univ. school of law	2017	
Introduction to Islamic law: principles of civil, criminal, and international law under the Shari'a / Burns, Jonathan G	JuraLaw	2014	
Michigan law review v.115-5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2017	
Minnesota law review v.101-3 /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Minnesota Law Review Foundation	2017	
Rechtstheorie v.47-2 / Krawietz, Werner	Duncker & Humblot	2016	
Rechtstheorie v.47-3 / Krawietz, Werner	Duncker & Humblot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tanford law review v.69-1 /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7	
Stanford law review v.69-2 /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7	
Stanford law review v.69-3 /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7	
Texas law review v.95-3 /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2017	
Tulane law review v.91-3 /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	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7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49-5 /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 Law School	2016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50-1 /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 Law School	2017	
Vanderbilt law review v.70-1 /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2017	

##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法學論叢 v.46-1 / 國立臺灣大學, 法律學系	[國立臺灣大學 法律學系]	2017	

##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6)독자불만처리보고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7	
(2016년도)법관연수 어드밴스(Advance)과정 연구논문집 : 전문분야 소송의 주요쟁점(조세/지식재산권/노동)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7	
(2017년 최신판<조문별>)재개발·재건축 사례실무 : 3차원 현실감 구현 / 안재길	법률정보센터	2017	
(Insight+)상표법판례 / 박종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산재에서 보험까지 알기쉬운)산업재해 보상법 / 김동재	시대의창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부동산공법 / 민규식	형설출판사	2017	
(理智)특허법 / 임병웅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최신)금융법 / 오영환	MJ미디어	2017	
(최신)세법 / 김광운	상경사	2017	
IT와 法 研究 v.14 / 경북대학교	IT와 법센터	2017	
건설재판실무 / 김홍준	유로	2017	
經營法律 v.27-1 / 한국경영법률학회	韓國經營法律學會	2017	
經營法律 v.27-2 / 한국경영법률학회	韓國經營法律學會	2017	
경쟁과 법 v.7 /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16	
공동주택경비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태형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7	
공정거래법 소송실무 / 정재훈	육법사	2017	
과학기술과 법: 사례와 이론중심 / 오승한	기한재	2017	
과학기술법연구 v.23-1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연구원	한남대학교 과학기술연구원	2017	
기업법 개설: 민법/상법(총칙·회사·보험)/어음·수표법 / 최기원	박영사	2017	
기업법무 리뷰 v.9-2 /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대학교	2016	
기업법연구 v.31-1 / 한국기업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2017	
나노안전에 관한 법적고찰 / 이천무	충북대학교	2017	
勞働法 / 이상운	법문사	2017	
노동법 / 임종률	박영사	2017	
노동법요해 / 이장훈	비엔엠북스	2017	
노동법: 개별적 근로관계법.1 / 노병호	진원사	2017	
노동법강의 / 김형배	신조사	2017	
노동법비판 / 알랭 쉬피오	오래	2017	
勞働法研究 v.42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7	
勞働法學 v.61 / 한국노동법학회	韓國勞働法學會	2017	
노동정책연구 v.2017-1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7	
노인 학대 범죄의 대책에 관한연구 / 오승주	東國大學校 大學院	2017	
농지법 이론과 실무 : 2017최신판 / 안재길	법률정보센타	2017	
디자인과법 /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한국디자인법연구회	채움북스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디자인보호법 개설 / 노태정	세창출판사	2017	
부동산조세법 / 민태욱	부연사	2017	
부정경쟁 방지법: 영업 비밀 보호법제 포함 / 최정열	진원사	2017	
사업신탁의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 구상수	成均館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2016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 조국	경인문화사	2017	
사회보장법 / 전광석	신조사	2017	
산업재산권법 / 김원준	Maronie press	2017	
산재보험법: 판례·행정해석·사례연구.(I) / 이상국	大明出版社	2017	
산재보험법: 판례·행정해석·사례연구.(II) / 이상국	大明出版社	2017	
稅務와 會計 研究 v.6-1 / 한국조세연구소	한국조세연구소	2017	
세법강의 / 이창희	박영사	2017	
세법개론: 2017 / 임상엽	상경사	2017	
稅法原論 / 오윤	한국학술정보	2017	
세법입문 / 이창희	박영사	2017	
세법학.II / 정정운	상경사	2017	
여신실무법률: 담보. I / 오시정	한국금융연수원	2017	
여신실무법률: 담보. II / 오시정	한국금융연수원	2017	
여신실무법률: 여신거래의 성립 / 최성현	한국금융연수원	2017	
외국은행 국내지점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이종호	成均館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2016	
외국환거래법규와 外換刑事法 / 김용태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7	
의료급여 법령집:2017.3 / 한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7	
의료법강의 / 이상돈	法文社	2017	
의사법학론 / 주호노	법문사	2017	
이나우스DB v.2017-1 /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7	
이나우스DB v.2017-2 /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7	
이나우스DB v.2017-3 /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7	
이나우스DB v.2017-4 /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7	
일·가정 양립제도의 노동시장 효과 /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2016	
일감 부동산법학 v.14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출판부	2017	
자본시장법 / 임재연	博英社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자본시장법: 사례와이론 / 김병연	박영사	2017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 안현수	成均館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2016	
재개발·재건축법대로 하는 법 :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돈 버는 소송 이야기 / 김향훈	끌리는 책	2017	
재개발·재개발·재건축 새로 바뀐 관련법 정리 [법령·서울시조례]: 2017년03월30일 시행에 따른 / 안재길	법률정보센터	2017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연구 / 당현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7	
저작권법: 사례·해설: Explanations and Cases / 이규호	진원사	2017	
저작권법강의 / 송영식	세창출판사	2017	
조세법 / 임승순	박영사	2017	
조세법쟁론 / 강석규	삼일인포마인	2017	
조세법의쟁점.2 / 태평양 조세팀	경인문화사	2017	
조세법전 / 삼일인포마인	삼일인포마인	2017	
조세법총론 / 이준봉	삼일인포마인	2017	
조세연구 v.16-3 / 한국조세연구포럼	세경사	2016	
조세연구 v.16-4 / 한국조세연구포럼	세경사	2016	
조세연구 v.17-1 / 한국조세연구포럼	세경사	2017	
조세총서 v.2016-6 /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6	
조세총서 v.2017-1 /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7	
조세총서 v.2017-2 /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7	
租稅學術論集 v.33-1 / 한국국제재정협회	韓國國際租稅協會	2017	
주석국가계약법 / 태평양. 건설부동산팀	박영사	2017	
증권분쟁해결법리 / 나지수	박영사	2017	
지방세실무해설:2017 / 전동훈	영화조세통합	2017	
지식재산권법의 이해 / 고영남	탐북스	2017	
지식재산연구 v.12-1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지적재산법 / 송영식	세창출판사	2017	
창작과 권리 v.2016-3 / 세창출판사	세창출판사	2016	
창작과 권리 v.2016-4 / 세창출판사	세창출판사	2016	
채불입금 해결시스템의 국제비교연구 : 임금 채권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2016	
출퇴근 재해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태형	충북대학교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토지이용 및 개발법 / 권영수	형설출판사	2017	
토지이용 및 개발법 실무 / 권영수	형설출판사	2017	
특허실무지식.1: 특허문서론 / 정우성	에이콘출판사	2017	
특허실무지식.2: 논증과 설득 / 정우성	에이콘출판사	2017	
특허법 / 오승택	박문각	2017	
특허법: 사례·해설 / 이규호	진원사	2017	
특허법상 간접 침해 범리에 관한 연구 / 문선영	成均館大學校 一般大學院	2016	
특허사용설명서 : 특허출원, 관리, 분쟁협상까지 기업 특허 전략의 모든것 / 최성규	라운북	2017	
특허의 이해 / 윤선희	法文社	2017	
환경관계법규. I: 대기편 / 홍문관법연회	홍문관	2017	
환경관계법규. II: 수질편 / 홍문관법연회	홍문관	2017	
環境法研究 v.38-3 / 한국환경법학회	韓國環境法學會	2016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분석.02: 내과(심장) / 김소운	박영사	2016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분석.03: 산부인과(산과) / 김소운	박영사	2017	
租稅研究 v.2017-3 / 日本租稅研究協會	日本租稅研究協會	2017	
環境法政策學會誌 v.20 / 環境法政策學會	商事法務	2017	
Berkeley journal of employment and labor law v.38-1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2017	
Eminentdomain:AComparativeperspective / Kim, Iljoo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Modern patent law precedent: Dictionary of key terms and concepts / Aisenberg, Irwin M. Cohen, Jerry	Thomson Reuters	2016	

##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가 중요시설 특수 경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오은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7	
국제 건설 에너지법: 이론과 실무 / 정홍식	박영사	2017	
국제법 / 이석용	세창출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법 기본조약집 / 박덕영	박영사	2017	
국제법 동향과 실무 v.44 / 한국.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2017	
국제법: 이론·판례 및 문제해설 / 정영진	신조사	2017	
국제법상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연구 : 국제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적용을 중심으로 / 경주영	東國大學校	2017	
국제법평론 v.45 / 국제법출판사	三宇社	2017	
국제법평론 v.46 / 국제법출판사	三宇社	2017	
國際法學會論叢 v.61-3 /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6	
국제사법 / 안춘수	法文社	2017	
國際私法研究 v.22-1 / 한국국제사법학회	법영사	2017	
로스쿨국제거래법 / 안강현	박영사	2017	
외국사법제도연구.20: 각국의 합의재판부 구성 및 합의부의 재판 방식에 관한 연구 /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7	
중재연구 v.27-1 / 한국중재학회	한국중재학회	2017	
한국과 국제법의 주요문제 / 이휘진	좋은땅	2017	
한반도 통일에 있어 국제법상 UN의 역할UN의역할 / 노동영	忠北大學校	2017	
European law review v.2017-1 / Arnulf, Anthony White, Robin C.A	Sweet & Maxwell	2017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6-1 /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7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6-2 /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7	
Revue géné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7-1 / A. Piler, P. Fauchille, A. Pedone	Pedone	2017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53-1 /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law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law	2017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v.77-1 / Bruns, Viktor, Bernhardt, Rudolf	W. Kohlhammer	2017	
Zeitschrift für Europäisches Privatrecht v.2017-1 / Basedow, Jürgen, Blaurock, Uwe, Kieninger, Eva Maria, Schulze, Reiner, Wagner, Gerhard, Zimmermann, Reinhard	C.H.Beck	2017	

##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判例)憲法編纂法 / 김현철	전남대학교출판부	2016	
公法研究 v.45-1 / 한국공법학회	韓國公法學會	2017	
公法研究 v.45-3 / 한국공법학회	韓國公法學會	2017	
공직선거법 / 황남기	기억나라	2017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7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 정의화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국회도서관	2017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 헬러, 헤르만	산지니	2016	
세계헌법재판동향 v.2014-1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4	
세계헌법재판동향 v.2014-2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4	
세계헌법재판동향 v.2014-3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4	
세계헌법재판동향 v.2014-4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4	
세계헌법재판동향 v.2014-5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4	
세계헌법재판동향 v.2014-6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4	
세계헌법재판동향 v.2015-1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5	
세계헌법재판동향 v.2015-2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5	
세계헌법재판동향 v.2015-3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5	
세계헌법재판동향 v.2015-4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5	
세계헌법재판동향 v.2015-5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5	
세계헌법재판동향 v.2015-6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5	
세계헌법재판동향 v.2016-1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6	
세계헌법재판동향 v.2016-2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6	
세계헌법재판동향 v.2016-3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6	
세계헌법재판동향 v.2016-4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6	
세계헌법재판동향 v.2016-5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6	
세계헌법재판동향 v.2016-6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6	
세계헌법재판동향 v.2017-1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7	
세계헌법재판동향 v.2017-2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7	
인권과 형사 사법 절차 / 최우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7	
인권판례평석 /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박영사	2017	
잊혀질 권리: 이상과 실현 / 문재완	집문당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법령에 대한 주석서: 헌법-법원 등에 관한 장 / 법제처	휴먼컬처아리랑	2015	
통신비밀의 보호범위와 한계에 관한 헌법상 연구 : 통신 비밀보호법을 중심으로 / 이진구	成均館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2016	
한국헌법론 / 전광석	집현재	2017	
한국헌법론 / 허영	박영사	2017	
헌법제119: 공정경쟁을 중심으로 /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2017	
憲法과憲法政治: 대통령제·의원내각제 / 김백유	한성대학교출판부	2016	
헌법소송법론 / 허영	박영사	2017	
헌법요론 / 김남진	전남대학교출판부	2016	
憲法理論과 憲法과憲法 / 허영	博英社	2017	
헌법재판소판례집 v.28-2-1 /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6	
헌법재판소판례집 v.28-2-2 /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6	
헌법판례선 / 권순현	삼조사	2017	
헌법학 / 성낙인	법문사	2017	
헌법학 / 장영수	弘文社	2017	
헌법학 / 한수웅	法文社	2017	
헌법학개론 / 홍성방	박영사	2017	
憲法學研究 v.23-1 /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7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6-1 /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6	
Public law v.2017-1 / Sweet & Maxwell Sweet and Maxwell	Sweet & Maxwell	2017	
Public law v.2017-2 / Sweet & Maxwell Sweet and Maxwell	Sweet & Maxwell	2017	

##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6년)행정법판례 / 최선웅	진원사	2017	
(사건유형별)행정 소송 이론 및 실무 / 김동근	법률출판사	2017	
(新)행정법입문 / 홍정선	박영사	2017	
경찰학연구 v.49 /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규제개혁과정정부책임 / 선정원	대영문화사	2017	
기본행정법 / 홍정선	박영사	2017	
기부 재납 법제에 관한 연구 / 양은영	成均館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2016	
정당보상으로서 공법상 생활보상에 관한 재인식 / 신경직	충북대학교	2017	
지방 재정법상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과 운용 / 천예주	충북대학교	2017	
土地公法研究 v.76 / 한국토지공법학회	韓國土地公法學會	2016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 가능 행위 / 강지은	경인문화사	2017	
행정구제법 / 최인호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행정법 / 정형근	피앤씨미디어	2017	
행정법 판례라인 / 박정훈	박영사	2017	
行政法. I / 김남진	法文社	2017	
行政法. I / 김동희	博英社	2017	
行政法. II / 김동희	博英社	2017	
행정법강의 / 박균성	博英社	2017	
行政法概論 / 정하중	法文社	2017	
행정법기본강의 / 박균성	博英社	2017	
行政法論.(上) / 박균성	博英社	2017	
行政法論.(下) / 박균성	博英社	2017	
행정법원론. 상 / 홍정선	박영사	2017	
행정법원론. 하 / 홍정선	박영사	2017	
행정법총론 / 이동식 전훈 김성배	준커뮤니케이션즈	2017	
행정재판발전위원회 백서 / 한국	법원행정처	2017	
행정쟁송법 / 홍준형	오래	2017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김용철 팔순기념 논문집 / 김철용	피앤씨미디어	2017	
현대행정법강의 / 김유환	법문사	2017	
환지 및 재개발·재건축의 실무 /·재건축의 실무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Revue Franç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7-1 / Dalloz	Dalloz	2017	

##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6년도)법관연수어드밴스(Advance)과정 연구논문집 : 특정주제연수(형사법 신중증거론, 법적판단과 의사결정론, 재판의 본질 그리고 법관의 역할)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7	
(신)형법총론 / 서거석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공공부문의 비리유형 및 특성 분석 / 차경엽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7	
矯正研究 v.73 / 한국교정학회	韓國矯正學會	2016	
矯正研究 v.74 / 한국교정학회	韓國矯正學會	2017	
김영란법 제대로 알기 / 조상규	프리덤월드	2017	
노인범죄의 대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김지형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정명진	東國大學校 大學院	2017	
少年保護研究 v.29-3 / 한국소년보호학회	한국소년보호학회	2016	
少年保護研究 v.29-4 / 한국소년보호학회	한국소년보호학회	2016	
少年保護研究 v.30-1 / 한국소년보호학회	한국소년보호학회	2017	
위법성 인식과 금지 착오에 관한 연구 / 김준우	東國大學校 大學院	2017	
조직 폭력 범죄의 대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이민수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7	
주요 도로 교통 범죄에 관한 연구 / 송경훈	東國大學校 大學院	2017	
청탁금지법강의 / 공성국	박영사	2017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적용사례 연구 /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2016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 형사 사법 입문 / 심희기	박영사	2017	
형법각론 / 이재상	박영사	2017	
刑法各論 / 임웅	法文社	2016	
형법강의각론 / 정성근	박영사	2017	
형법강의:[각론] / 정영일	學林	2017	
형법강의:[총론] / 정영일	學林	2017	
형법의 정치도구화에 대한 성찰 : 국가와 국민의 불편한 권력관계에 대하여 / 손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형법총론 / 김성돈	SKKUP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7	
형법총론. 제2권 / 한정환	동방문화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刑事法研究 v.68 / 한국형사법학회	韓國刑事法學會	2016	
형사법의 신동향 v.54 / 한국.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대검찰청	2017	

##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최신)상법총론 / 한창희	청목출판사	2017	
미국상법: 미국 공인회계사 수험서 / 공영찬	one	2017	
보험법 / 박세민	박영사	2017	
보험사기 판례 정리집: 허위과다입원 / 조효민	미상	2017	
商法講義 / 송옥렬	弘文社	2017	
상법강의.(상) / 정찬형	박영사	2017	
상법강의.(하) / 정찬형	박영사	2017	
商事法研究 v.35-3 / 한국상사법학회	韓國商事法學會	2016	
商事判例研究 v.30-1 /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7	
전자무역 결제제도의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 남현숙	成均館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2016	
海事法研究 v.29-1 / 한국해사법학회	韓國海事法學會	2017	
회사법 / 류시창	法文社	2017	
회사법 / 장덕조	법문사	2017	
회사법: 사례와이론 / 홍복기	박영사	2017	
會社法講義 / 이철송	博英社	2017	
회사법사례강의 / 정응기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회사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한중회사법 비교 연구 / 전묘	嶺南大學校 大學院	2017	
事業報告記載事項の分析:平成28年6月總會会社の事例分析 /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7	
海法會誌 v.89 / 日本海法會	勁草書房	2017	

## [사법, 소송절차, 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7)법원공무원교육원 교육제도 개편백서 :교육원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017	
(사례로보는)주식회사 건설당실무 / 염춘필	백산서당	2016	
(새로운)법원실무핸드북: 민사소송·민사집행·가압류·가처분 ·가사·가사비용·부동산등기·형사·공탁 / 유상규	법률정보센터	2017	
(신)일반회생실무: 일반회생·간이회생 / 장중운	진원사	2017	
(신청사례로보는)法人登記實務大典.(상) / 이남우	백영사	2017	
(신청사례로보는)法人登記實務大典.(하) / 이남우	백영사	2017	
(통합도산법에따른)법인·개인 회생사건 처리실무 : 소송실무자료 / 유재복	법률정보센터	2017	
각국의 상업 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법원행정처	2017	
국민 참여재판의 허와 실 / 공영호	박영사	2017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 인사제도의 모색 : 법관 독립강화의 관점에서 / 국제인권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2017	
법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덕목의 실증적 분석 및 실천방법론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17	
법조윤리 / 한인섭	博英社	2017	
사법정보센터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수립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17	
Cross-border insolvency law: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commentary / Wessels, Bob	Kluwer Law International	2015	
Cross-border insolvency: principles and practice / Ho, Look Chan	Thomson Reuters	2016	
European cross-border insolvency law / Bork, Reinha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Finding, freezing and attaching assets: A multi-jurisdictional handbook / Jørgensen, Jacob C	Kluwer Law International	2016	
Licences and insolvency: a practical global guide to the effects of insolvency on IP licence agreements / Nordmann, Matthias Johannes	Globe Law and Business	2014	
Moss, Fletcher and Isaacs on the EU regulation on insolvency proceedings / Moss, Gabriel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본강의)민사소송법 / 전병서	弘文社	2017	
공익소송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김태호	사법정책연구원	2017	
民事訴訟法雜誌 v.63 / 民事訴訟法學會	法律文化社	2017	
법문서작성방법과법리 / 김재덕	법문북스	2017	
新民事訴訟法 / 이시운	박영사	2017	
요건사실론.2017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7	
통합민사법 / 김홍엽	박영사	2017	

##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간추린)신형사소송법 / 신동운	法文社	2017	
경찰의 과학수사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강희주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7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동의를 관한 헌법적 연구 / 강문찬	東國大學校 大學院	2017	
판례형사소송법 / 김태명	피앤씨미디어	2017	
형사소송법 / 노명선	SKKUP	2017	
형사소송법 / 이재상	박영사	2017	
刑事訴訟法 / 이창현	피앤씨미디어	2017	
형사소송법핵심판례110선=2016년 선고된 최신판례14건 추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박영사	2017	
刑事訴訟法: 平成28年法改正の概要解説と新旧対照条文を追補 /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7	

##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례로 보는)상속유류분 / 오경수	지혜와지식	2017	
(새로운)손해배상자료집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新)민법강의 / 송덕수	박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新)민법입문 / 송덕수	박영사	2017	
(알기 쉽게 풀이한)주택·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 이론·서식·해설·상당사례 / 김덕원	진원사	2017	
(판례로 배우는)법정채권관계법 / 박영규	법원사	2017	
家族法研究 v.31-1 / 한국가족법학회	韓國家族法學會	2017	
계약법: 민법판례교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우사	2017	
계약법: 이론·판례 / 송오식	동방문화사	2017	
계약실무총람 / 장인태	법률출판사	2017	
근저당권의 이론과 실무 / 오시정	한국금융연수원	2017	
擔保法 / 제철웅	栗谷出版社	2017	
물권법 / 송덕수	박영사	2017	
물권법: 이론·사례·판례 / 김준호	法文社	2017	
미국계약법: 국제계약실무 및 미국 변호사자격 취득 대비 / 조국현	진원사	2017	
民法講義 / 지원립	弘文社	2017	
민법총칙 / 강태성	대명출판사	2017	
민법총칙 / 최문기	세종출판사	2017	
민법총칙: 이론·사례·판례 / 김준호	法文社	2017	
부동산공시법: 등기·공간정보 / 임윤수	형설출판사	2017	
不動産登記法 / 정우형	법우사	2017	
사단(社團)재단(財團)·비영리·공익법인의 절차실무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산재)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발전재단	2017	
財産法研究 v.33-4 / 한국재산법학회	法文社	2017	
집합건물관련선례·예규판례정리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 이론·사례·판례 / 김준호	法文社	2017	
채권자(대위권·취소권)의 재판실무 / 임호택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자취소권 / 이순동	육법사	2017	
交通法研究 v.45 / 日本交通法學會	有斐閣	2017	
私法判例リマークス : 判例評論 v.54 /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7	
事業再生と債權管理 v.156 / 金融債政事靑研究會	金融債政事靑研究會	2017	

##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速報判例解説 v.20 /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7	

- 일반도서

##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情報管理學會誌 v.34-1 /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7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16-4 /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2016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17-1 /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2017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48-1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7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50-4 /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2016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28-1 /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2017	

##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1986(I) / 한국. 외교부	외교부	201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1986(II) / 한국. 외교부	외교부	2017	
國防研究 v.60-1 / 국방연구원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2017	
대한민국재정:2017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7	
여성연구 v.92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정부기구도표 v.2017 / 한국.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2017	
통일백서 v.2017 / 한국. 통일위	통일부	2017	
韓國行政研究 v.26-1 /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研究院	2017	
行政論叢 v.55-1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2017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2016 / Korean Bar Association	Korean Bar Association	2017	

##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수혈의학 / 한규섭	고려의학	201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I: 건강과질병, 역학과그응용 / 대한예방의학회	계축문화사	2017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II: 환경과건강 / 대한예방의학회	계축문화사	2017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III: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 대한예방의학회	계축문화사	2017	
직업환경의학 /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계축문화사	2014	
(Benzel's)Spinesurgery:techniques, complicationavoidance, an dmanagement,1 / Benzel, Edward C	Elsevier	2017	
(Benzel's)Spinesurgery:techniques, complicationavoidance, an dmanagement,2 / Benzel, Edward C	Elsevier	2017	
Williamsobstetrics / Cunningham, F. Gary	McGraw-Hill Education Medical	2014	

• 정기간행물 목록

[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Legal Times Vol.106(2017. 05)	(주)리걸타임즈	격월간
2	거래가격통권 556호(2017. 05)	대한건설협회	월간
3	考試界 62권 5호(통권 723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4	노동법률통권 312호(2017. 05)	中央經濟社	월간
5	문학사상 2017년 05월	문학사상사	월간
6	司法行政 58권 5호(통권 677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7	속보삼일총서통권 1415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41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속보삼일총서통권 1417호+별책부록(2017. 04)	삼일회계법인	주간
10	시사저널 No.1434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435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436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시사저널 No.1437	(주)독립신문사	주간
14	시사저널 No.1438	(주)독립신문사	주간
15	신동아 2017년 05월	동아일보사	월간
16	월간 인사관리 2017. 05 vol.333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17	월간조선 2017년 05월	조선일보사	월간
18	월간중앙 2017년 05월	중앙일보사	월간
19	이코노미스트 No.1379	중앙일보시사 미디어사	주간
20	이코노미스트 No.1380	중앙일보시사 미디어사	주간
21	이코노미스트 No.1381	중앙일보시사 미디어사	주간
22	이코노미스트 No.1382	중앙일보시사 미디어사	주간
23	이코노미스트 No.1383	중앙일보시사 미디어사	주간
24	종합물가정보통권 558호 I, II호+부록(2017년 05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25	주간조선 No.2451	조선일보사	주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6	주간조선 No.2452	조선일보사	주간
27	주간조선 No.2453	조선일보사	주간
28	주간조선 No.2454	조선일보사	주간
29	주간조선 No.2455	조선일보사	주간
30	출판저널 Vol.496(2017. 05)	출판저널	월간
31	現代文學 2017년 05월	현대문학사	월간

## [일본서 정기간행물 목록]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季刊)刑事辯護 No.90(2017 Summer)	現代人文社	계간
2	(旬刊)商事法務 2128號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2129號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2130號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2131號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420	商事法務研究會	부정기
7	(月刊)登記情報 57卷 4號 (665號)	テイハン	월간
8	NBL 1094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095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コピーライト Vol.57 No.672	著作権情報センタ	월간
11	ジュリスト 1504號	有斐閣	격주간
12	ジュリスト 1505號 重要判例摘録(臨時増刊)	有斐閣	격주간
13	パテント 70卷 3號(通卷 81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交通法研究 第45號(2017)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60年	有斐閣	연간
15	國際去外交雜誌 115卷 4號	國際去學會	계간
16	國際商事法務 45卷 4號(通卷 658號)	國際商事法務研究所	월간
17	金融·商事判例 No.1513	經濟法令研究會	반월간
18	金融·商事判例 No.1514	經濟法令研究會	반월간
19	金融法務事情 2062號	金融財政事情研究會	순간
20	金融法務事情 2063號	金融財政事情研究會	순간
21	勞動法律旬報 1884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2	勞動法律旬報 1885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3	勞動判例 No.1150	産勞總合研究所	반월간
24	勞動判例 No.1151	産勞總合研究所	반월간
25	登記研究 829號(2017. 03)	テイハン	월간
26	文藝春秋 2017年 05月號	文藝春秋	월간
27	民事訴訟雜誌 Vol.63(2017)	法律文化社	연간
28	民商法雜誌 153卷 1號	有斐閣	월간
29	發明 114卷 4號(2017. 04)	發明協會	월간
30	法律のひろば 70卷 4號	ぎょうせい	월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法律時報 89卷 4號(通卷 1110號)	日本評論社	월간
32	法律時報 別冊 No.54 : 私法判例リマークス	日本評論社	월간
33	法律判例文獻誌通卷 460號	第一法規	월간
34	法曹時報 69卷 3號	法曹會	월간
35	法學 80卷 6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36	法學セミナー (増刊)速報判例解説 Vol.20(2017年 04月)	日本評論社	월간
37	法學セミナー 62卷 5號(通卷 748號)	日本評論社	월간
38	法學セミナー 別冊 No.246	日本評論社	월간
39	法學教室439號(2017. 04)+(別冊附録 ライブ 起案講義憲法)	有斐閣	월간
40	法學論叢 180卷 3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1	法學論叢 180卷 4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2	法學論叢 180卷 5-6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3	法學新報 123卷 11·12號	有斐閣	월간
44	法學新報 123卷 9·10號	有斐閣	월간
45	法學研究 90卷 1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法學研究 90卷 2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法學志林 114卷 3號	法政大學	계간
48	法學志林 114卷 4號	法政大學	계간
49	法學協會雜誌 134卷 3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比較法研究 78卷(2016)	有斐閣	연간
51	比較法雜誌 50卷 3號(通卷 179號)	日本比較法研究所	계간
52	比較法雜誌 50卷 4號(通卷 180號)	日本比較法研究所	계간
5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31卷 1號(通卷 156號)	金融再生政策研究會	계간
54	銀行法務 21 61卷 4號(812號)	經濟法令研究會	월간
55	銀行法務 21 61卷 5號(813號)	經濟法令研究會	월간
56	立教法學 95호	有斐閣	계간
57	自治研究 93卷 4號 (通卷 1118號)	第一法規	월간
58	租稅研究 第809號(2017. 03)	日本租稅研究協會	월간
59	罪と罰 54卷 2號(通卷 214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60	阪大法學 66卷 6號(通卷306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61	判例タイムズ 1433號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2	判例時報 2321號	判例時報社	순간
63	判例時報 2322號	判例時報社	순간
64	判例時報 別冊附錄 總索引(2274號-2310號)	判例時報社	순간
65	判例地方自治 417號(2017. 03)	ぎょうせい	월간
66	海法會誌 60號 (通卷 89號)	勁草書房	연간
67	現代消費者法 No.34	民事法研究會	계간
68	戶籍 937號	テイハン	월간
69	戶籍 938號	テイハン	월간
70	環境法政策學會誌 Vol.20	環境法政策學會	연간

## [서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Cambridge law journalVol.76 Part.1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Band.142 Heft.1	J. C. B. Mohr	계간
4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1	J. C. B. Mohr	격월간
5	BB(Betriebs-Berater) Jahrg.72 Nr.1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6	BB(Betriebs-Berater) Jahrg.72 Nr.15/16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7	BB(Betriebs-Berater) Jahrg.72 Nr.1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8	BB(Betriebs-Berater) Jahrg.72 Nr.1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9	Bundesgesetzblatt Teil I Nr.15 (2017)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0	Bundesgesetzblatt Teil I Nr.16 (2017)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1	Bundesgesetzblatt Teil I Nr.17 (2017)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2	Bundesgesetzblatt Teil I Nr.18 (2017)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3	Bundesgesetzblatt Teil I Nr.19 (2017)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4	Bundesgesetzblatt Teil I Nr.20 (2017)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21 (2017)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22 (2017)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I Nr.7 (2017)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8 (2017)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9 (2017)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4	Gieseking	월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21	Der Spiegel 2017, Nr.15	Spiegel	주간
22	Der Spiegel 2017, Nr.16	Spiegel	주간
23	Der Spiegel 2017, Nr.17	Spiegel	주간
24	Der Spiegel 2017, Nr.18	Spiegel	주간
25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7	Verlag Dr.Otto Schmidt Koln	격주간
26	Die Ö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	Kohlhammer	반월간
27	Die Ö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2	Kohlhammer	반월간
28	Die Ö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3	Kohlhammer	반월간
29	Die Ö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4	Kohlhammer	반월간
30	Die Ö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5	Kohlhammer	반월간
31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4	Carl Heymanns	반월간
32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5	Carl Heymanns	반월간
33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6	Carl Heymanns	반월간
34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7	Carl Heymanns	반월간
35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8	Carl Heymanns	반월간
36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9	Carl Heymanns	반월간
37	EuZW(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ang.28 Heft.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8	EuZW(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ang.28 Heft.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EuZW(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ang.28 Heft.9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0	FamRZ(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4 Hft.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41	FamRZ(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4 Hft.8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9 Nr.4	Wiley-VCH	월간
43	Golt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Jahrg.164 Hft.3	R.v.Decker	월간
44	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 Heft.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	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 Heft.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46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40 No,1(Winter)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연3회
47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9.N.1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48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9 Hft.4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월간
49	Law Library Journal vol.109 no.1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계간
50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ahrg.71 Hft.7	Otto Schmidt	반월간
51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ahrg.34 Hft.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2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ahrg.34 Hft.6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3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ahrg.34 Hft.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4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ahrg.34 Hft.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5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 Jahrgang. 37 Heft.4	C. H. Beck	월간
56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 Jahrgang. 37 Heft.5	C. H. Beck	월간
57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 Heft.7	C. H. Beck	월간
58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 Heft.8	C. H. Beck	월간
59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 Heft.9	C. H. Beck	월간
60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20 Heft.10	Verlag C. H. Beck OHG	순간
61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20 Heft.11	Verlag C. H. Beck OHG	순간
62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20 Heft.12	Verlag C. H. Beck OHG	순간
63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20 Heft.13	Verlag C. H. Beck OHG	순간
64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20 Heft.7	Verlag C. H. Beck OHG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5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20 Heft,8	Verlag C. H. Beck OHG	순간
66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20 Heft,9	Verlag C. H. Beck OHG	순간
67	Patent Law Digest 2016 Edition	Matthew Bender	연간
68	POUVOIRS(구:LA POLOGNE) 2017, No.160	EDITIONS DU SEUIL	계간
69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41 Heft,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cking GmbH	월간
70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6, N.4(4-12)	daloz	계간
71	Revue franc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109(2017. 03)	puf	계간
72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 N,1 (2017. 1-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	계간
7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7, No.1	Daloz	계간
7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5	Luchterhand	월간
75	The law quarterly review Vol.133(2017, April)	Sweet & Maxwell	계간
76	Transportrecht Jahrgang.40 Heft,1	Luchterhand	월간
77	Transportrecht Jahrgang.40 Heft,2	Luchterhand	월간
78	Transportrecht Jahrgang.40 Heft,3	Luchterhand	월간
79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7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80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8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8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1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82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10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8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11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8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12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8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13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86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14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8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15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8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1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8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1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9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2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9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92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4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9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5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9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9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96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8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9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9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98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7 Hft.1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99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7 Hft.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00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7 Hft.3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01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7 Hft.4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02	Zeitschrift für Gesetzgebung Jahrg.32 Hft.1	C.F.Muller	계간
103	Zeitschrift für Insolvenzrecht Jahrg.78 Hft.1	Carl Heymanns	계간
104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8 Hft.14	RWS	주간
105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8 Hft.15+Ewir 7	RWS	주간
106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8 Hft.16	RWS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107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 38 Hft.17+Ewir 8	RWS	주간
108	Zeitschrift für Zivilprozess Band 130 Heft.1	Carl Heymanns	계간